

조문 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 :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

◇ 제 · 개정 이유

○ 「정부조직법」 개정(‘25.10.2 시행)으로 부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,

- 「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」에 명기된 부처 명칭(산업통상자원부)을 개정된 명칭(산업통상부)으로 변경하여 상위 근거법령*과의 일치화 필요

* 「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」, 동법 시행령, 동법 시행규칙

◇ 주요내용

가. ‘산업통상자원부’를 ‘산업통상부’로 명칭 변경(운영요령 제9조제5항, 제11제4항, 제13조 3항)

첨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(첨부)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운영위원회 운영) ① ~ ④ (생략)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항 에 따라 평가기관을 선정하 는 경우에는 평가기관 선정 사실을 <u>산업통상자원부</u> 또는 국가기술 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하여야 한다.	제9조(운영위원회 운영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----- <u>산업통상부</u> ----- -----.
제11조(평가기관 지정) ① ~ ③ (생략)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 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 우 위탁 사무의 내용, 근거, 평 가기관, 위탁기간 등을 <u>산업통 상자원부</u>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	제11조(평가기관 지정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산업통상부</u> ----- ----- -----.
제13조(관리·감독) ①·② (생 략)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	제13조(관리·감독) ①·② (현 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

정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정 취소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④·⑤ (생략)

-----.
-----.

----- 산업통상부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④·⑤ (현행과 같음)